

보도 일시	2022. 12. 22.(목) 배포 시	배포 일시	2022. 12. 22.(목)
담당 부서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책임자	과 장 홍기성 (044-201-2551)
		담당자	사무관 김석재 (044-201-2555)

**경북 성주군 산란계 농장 및 경남 하동군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전남 곡성군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북 성주군 소재 산란계 농장(약 66,000마리 사육) 및 경남 하동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9,5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고, 전남 곡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 가금농장 발생('22.10.17.~): 50건(종오리 8건, 종계 3건, 육용오리 20건, 육계 2건, 산란계 14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1건)
- \* (검사 중) 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sup>51차(잠정)</sup>, 전남 곡성군 산란계 농장<sup>52차(잠정)</sup>

전남 곡성군 산란계 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곡성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하였고,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22일(목) 23시부터 12월 23일(금)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남 곡성군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중수분은 전남·전북 등의 지역에서 대설 특보가 발효되고, 한파가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농장 내부로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동파 등으로 소독시설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농장 관계자는 고정식 소독기와 고압분무기를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에 따라 매일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1단계) 농장 출입 시 소독 철저 → (2단계) 농장 내부 관리 철저 → (3단계)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 붙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담당 부서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책임자	과 장	홍기성	(044-201-2551)
		담당자	사무관	김석재	(044-201-2555)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책임자	과 장	남형용	(044-201-7491)
		담당자	사무관	강민주	(044-201-7502)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예방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p><b>1단계</b>      <b>농장 출입시 소독 철저</b></p> <p>농장진입로 폭 2m이상 생석회 충분히 도포</p> <p>출입구 고정식+고압분무기 2단계소독</p>  <p>- 1주일 간격 반복 도포 - 비-눈 내린 후 즉시 재도포</p> <p>- 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 추가 소독</p>	<p><b>2단계</b>      <b>농장 내부 관리 철저</b></p> <p>농장 내부(축사 밖) 매일 청소·소독</p> <p>부출입구·뒷문 폐쇄</p>  <p>※ 소독약은 용법용량 권장 희석배수 준수</p> <p>- 농장 내 아생조수류 유인 요소 (사료·폐사축왕겨) 매일 청소소독</p> <p>- 전실 미설치 축사 뒷문(쪽문) 폐쇄 - 방역·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출입구 폐쇄</p>
<p><b>3단계</b>      <b>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b></p> <p>축사 출입시 전용장화 갈아신기 손소독(위생장갑 착용시 포함) 실시</p> <p>전실</p>  <p>※ 신발소독조 소독약은 2~3일 간격 교체</p> <p>- 전실에 전용장화·손소독제 비치·전실 매일 소독 - 신발(장화)에 붙은 유기물 제거 후 신발소독조 사용 - 장화 갈아신기용 구조물 또는 발판 설치</p>	<p><b>4단계</b>      <b>축사 내부 매일 소독</b></p> <p>축사 출입구, 내부 통로, 환기구 등 집중 소독 정기적인 설치류 제거 및 안개분무 소독</p>  <p>- 사람·가축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사 금지 -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p>

농장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가축질병 피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